

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6월 20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5월 28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도록 하고,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 신설)
- 2)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본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및 실태 조사의 개선 및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실태조사 시 학교장, 학생,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
(안 제5조제2항 신설)

○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 조사할 경우 해당 구역의 실정 및 필요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교장,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나)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0조 신설)

○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시행주체에게 요구하고,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학로 주변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